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1일,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4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주호영의원)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문상)

현행법 제39조는 공무원의 퇴직, 사망 및 장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¹⁾의 경우 해당 급여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 가. 퇴직연금
 - 나. 퇴직연금일시금
 -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 가. 퇴직유족연금
 -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2)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음.

3) 참고로, 채권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원칙적으로 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이에 현행법상 이혼 등 사유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는⁴⁾ 현행법에 따른 급여 받을 권리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는 실정임.

개정안은 양육비 채권자가 현행법에 따른 급여받을 권리에 대해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 양육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공감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헌법재판소⁵⁾가 압류금지조항 중 양육비채권에 관한 부분은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이 다수의견이지만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

아울러 연금 수급자가 생계비 이상의 연금 급여를 받으면서 채무이

4)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5) 2018.7.26. 2016헌마260

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어려운 처지의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압류 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 받을 권리를 가진 양육비 채무자와 양육비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는 적절한 방법인지, 다른 연금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급여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 금지⁶⁾와의 형평성 및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

6)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군인연금법」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별정우체국법」

제31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압류할 수 없다.

원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⁷⁾에 따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법률에서 급여수급권 압류 금지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채권 강제집행에 대한 일반법인 「민사집행법」에서도 연금 등 급여채권은 1/2로 압류 제한하고 있는 등 법률상의 체계를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법」에서만 양육비 채권에 대해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개정법률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성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게 양육 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일부 법문의 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7.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구분하고 호를 신설하는 한편,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일부 법문을 수정하고(안 제39조제1항 단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 신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9조제1항 단서 중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 ----- ----- -----. <u>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u> <u><신 설></u>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 ----- ----- -----. <u>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u>

<u><신 설></u>	<u>하는 경우</u>
<u><신 설></u>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
<u><신 설></u>	부 칙
<u><신 설></u>	<u>제1조(시행일)</u> (개정 안 부칙과 같음)
<u><신 설></u>	<u>제2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u> <u>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u>

		<u>비 채권(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u> <u>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u> <u>적용한다.</u>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 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u>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 ----- ----- <u>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u> <u>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u> <u>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u>